

소셜부스터2023 참여 기업 모집 공고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단계별 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소셜부스터2023」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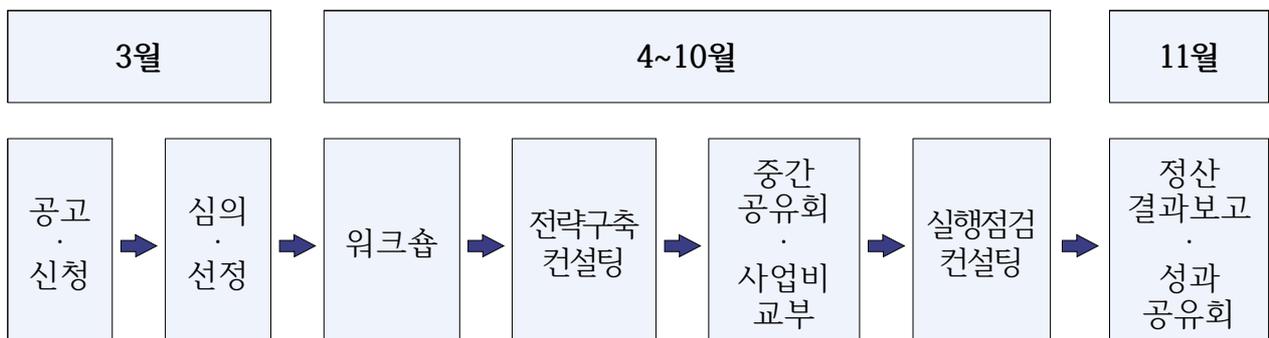
2023년 3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I 사업 개요

- 사업명 : 사회적경제기업 비즈니스고도화 사업「소셜부스터 2023」
- 사업목적 : 1:1기업 맞춤형 멘토링, 실행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제주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사업기간 : 2023년 3월 선정 이후부터 ~ 11월
- 신청기간 : 2023년 3월 6일(월) ~ 3월 24일(금) 24시
- 지원규모 : 총 3개 기업 이내
 - 컨설팅 기업당 최대 9회 (전략구축 컨설팅 5회 + 실행점검 컨설팅 2회/최대 4회)
 - 실행사업비 지원 기업당 최대 1,500만원 이내
 - ※ 최대 총 사업비(1,650만원) = 지원금(1,500만원)+자부담 10%(150만원)

□ 사업추진일정



II 모집 세부내용

□ 신청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 최근 3개년(2020~2022) 중 평균 매출액 1억원 이상 보유 기업

신청제한

- 주사무소 소재지가 제주도가 아닌 기업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약정 해지된 기업
- 당 해년도 사업개발비 및 타 기관에서 유사사업으로 재정 지원을 받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에 동일 내용 또는 동일 항목으로 중복지원은 불가
- 휴·폐업 중인 기업
- 아래의 사회적경제조직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지정)받은 법인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로부터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법인
 -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기업의 요건을 갖춘 법인

□ 신청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1	사업참여신청서	[서식1]
2	사업실행계획서(사업비 사용계획 포함)	[서식2]
3	기업정보제공·활용동의서	[서식3]
4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식4]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증빙1]
6	사회적경제 조직 증빙서류	[증빙2]
7	사업자등록증	[증빙3]

□ 상세일정

공고 및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 2023.03.06.(월) ~ 03.24.(금) 24:00 까지 접수 분에 한함. 방법 : 홈페이지(http://www.jejuhub.org/) 가입 후 사업신청
↓	
서류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 : 2023.03.27.(월). 방법 : 제출 서류 내부 검토※ 서류심사 결과는 3월 28일(화) 이메일로 통보
↓	
대면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 : 2023.03.30.(목) 예정. 내용 : 사업계획, 조직 역량, 사회적미션 등 하단의 평가기준 참고. 방법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대면심의 결과, 필요시 현장점검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음
↓	
선정결과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 2023.03.31.(금) 예정. 방법: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연락

※ 상기 일정은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함

□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기한 : 공고일 ~ 2023년 03월 24일(금) 24:00 자정까지 접수에 한함
- 제출방법 : 홈페이지(<http://www.jejuhub.org/>)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 * 소식공유-지원센터 소식-2023 소셜부스터 공고 내 첨부파일 작성 후 제출서류 압축(.zip) 파일 첨부
- 문 의 처 :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업육성팀 ☎ 064-724-0165
- 사업담당자 : 기업육성팀 양동화 ☎ 070-4215-5780

III 심사 및 선정

□ 선정방법

○ 평가방법

- ▶ (기본) 서류심사 : 심의위원회 구성 후 제출서류 심사
- ▶ 대면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 후 사업계획서 발표

(대면심의를 발표용 PPT 10매 이내 작성)

※ 최종 선정은 행정 및 대면심의를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함

※ 대면심의를 결과, 필요 시 현장점검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심의 과정에서 적격자가 없을 시 전부 또는 일부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항목

기본	평가내용		배점
서류심사 (5)	[서식1] 사업신청서 [서식2] 기업·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증빙1] 최근 3년간재무제표 [증빙2] 사회적경제 조직 증빙서류(인증서, 설립신고증, 지정서, 약정서 등) [증빙3] 사업자등록증 ※서류 미비의 경우 기본 배점에서 감점 후 보완제출 요청함(1건 당 1점 감점)		5
1차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대면심의 (95)	사업계획 (50)	사업계획 또는 실행과제의 목표부합성과 구체성	20
		성과목표의 적정성	15
		예산배분의 적정성	15
	단체역량· 사회적미션 (45)	사업의 사회적 가치 정의의 구체성	15
		사회가치 창출방식(모델) 혁신성	15
		대표자의 추진 의지 및 인력의 배치 적정성	15
① 동점자 처리 기준 : 우선순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채택 ※ 우선순위 : 사업계획 > 사회적미션 > 단체역량 ② 서류+대면 심의 합산 결과 평균 70점미만 기업은 선정 제외			

IV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사용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비는 세부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
 - 사업화에 필요한 직접 사업비로만 작성하며 부가세 포함
 - 사업화에 필요한 간접비용(회의비, 사업관리비 등)은 자부담 편성

- 신청 및 심사관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심사 및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고유 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선정 결격사유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직인 및 서명 누락 포함)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부도, 화의, 법정관리, 민·형사상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비즈니스고도화 사업 「소셜부스터 2023」 사업비 사용 기준

항	목	지출 예시	비고	
직 접 사 업 비	사업 개발비	시제품 및 판매품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제품 및 판매품 제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제품제작 소요 기술료, 디자인비, 설계비, 원료구입비 등 - 시제품 및 샘플, 판매품 제작비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 (×) 수익모델과 직접 관련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사용 불가, 	※ 기타 세부 사용기준은 센터와 논의
		기자재 구입 및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재 구입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경비로, <u>사업 종료 이후 5년간 임의처분 불가</u> - 기자재 운영계획서 및 견적서 등에 따라 심의위원회(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승인하에 구입가능 - 총 사업비 30% 이내 편성가능하며, 집행확정 시 자부담 50% 이상 부담하여야 함 (●) 기자재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자재의 임차,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u>사업기간 이내까지 지출가능</u> - 기자재 운영계획서 및 견적서 등에 따라 심의위원회(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승인하에 임차가능 - 총 사업비 30% 이내 편성가능 	
		시장 조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비용은 사업 유형에 따라 멘토 승인 하에 항목 허용 (●) 시장조사에 소요되는 정성·정량조사비 	
	홍보마케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용역 등 사업전반 홍보에 관련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비(광고 및 광고료 등) - 제품전시 및 투자박람회 참가에 따른 부스 등 소요 경비 (단, 여비, 인건비 제외) (●) 대관, 대여, 행사물품 구매 및 제작, 플랜카드 등 세부행사에 관련한 비용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료집, 리플렛 제작 등 		
	교육훈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비용은 사업 유형에 따라 멘토 승인 하에 항목 허용 (●) 사업과 관련한 세미나, 외부 전문가 및 교육기관 실시 교육비 (●) 사업과 관련한 직원 오리엔테이션, 교육 및 훈련비 		
간 접 사 업 비	일반수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관련한 사무용품 구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활동과 직접 관련된 사무용품비, 복사용지 및 문구류 등 소모성 물품 구입비에 한함 (×) 불가 항목 : 각종 사용료, 비품수선비, 관리비, 공공요금(우편, 전화 등), 제세공과금, 전산(설비)정보사용료(유지보수비포함), 회계정산 비용(법인세, 자동차세, 주민세, 소득세 등의 세금 납부 목적 지출 불가),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가능한 인사, 노무, 재무, 경영컨설팅 비용, 회계 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사업 관련성이 없는 발송비 	※ 총 사업비 15% 이하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과 관련한 부가세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사업비 용역 계약에 의한 부가세, 타행이체 시 은행 송금수수료, 		

		직접사업비와 관련 있는 택배비 등 - 부가세 집행의 경우 1차로 기업 자부담 금액에서 선집행 처리하며, 필요시 필요금액 만큼 사업비 통장으로 여입하여 집행하여야 함 - 제주도 지리적 특성상 인터넷을 통한 제품 구입 시 전체 상품 금액에 배송비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배송비를 포함한 총 금액에서 부가세 금액만 일반수용비로 분리함	
--	--	---	--

※ 전체 항목 중 개별단위 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는 가급적 집행을 지양함

※ 세부사용 기준에 대해서는 사업개발비 교부 시 선정기업 대상 별도 설명회 진행 예정

※ 사업비는 자부담 지출이 우선이며, 향후 사업 종료 시 사업비 잔액(예금이자 포함)이 발생할 경우 센터 계좌로 전액 반납하여야 함

□ 사업비 사용 제한

- 선정 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 수익모델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비용
- 회계감사, 소송대리 비용
- 관리비, 공공요금(우편, 전화 등), 제세공과금, 전산(설비)정보사용료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
- 기타 사업계획서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그 밖에 심사 및 컨설팅 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V 붙임

- 서식1. 사업참여 신청서
- 서식2. 사업실행계획서
- 서식3. 기업정보제공·활용동의서
- 서식4.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